



2020년
학원(독서실),교습소 연수

주최 :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관 : 인천광역시학원연합회

학원 비치 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		준영구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학원만 해당)		준영구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		준영구
4. 현금출납부	별지 제9호서식	5년
5.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6호서식	5년
6. 수강생 대장	별지 제1호서식	3년
7. 직원 명부	별지 제10호서식	계속
8. 수강생 출석부(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 해당) <개정 2019. 1. 10.> 삭제	3년	3년
9.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개정 2017. 3. 21.> 삭제	별지 제17호서식	3년

비치장부 및 서류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2020.3.31.개정사항 포함)

수입지출장부(명칭변경)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2020.3.31.개정사항 포함)

구분	이전기준 운영일	변경내용
1. 예외로써(만약)교과지 편입이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종금지 최장프로그램 금지일 날	과외 업무만 포함되겠음 (과외 업무만 포함되었을 경우도 운영 금액이 가산 처리될 또는 직수료료 적용 시과외업무 포함수여부터 제외일 날과 동일하게 함)
2. 해당교과(항목)특정 및 기타사항 (분과선정시 제외하는 경우)	학생활동비, 운영비, 프 람자 또는 기타프로그램 출납금, 운영비, 강사 급여등 직수료 금(과외 수업료)에 포함되는 날과 동일	이와 관련된 교육비등 (과외 업무만 포함되었을 경우)은 전액 포함 (과외 제외) 또는 과외 제외 수입을 할 수 없거나 직수료료를 적용할 수 없는 날 으로 인정하여 됨(후)
3. 해당교과(항목) 포함기간 (1) 반수생은 반수기간 종료 후 반수기간 종료 후 제정하는 경우 후	(1) 반수생은 반수기간 종료 후 반수기간 종료 후 제정하는 경우 후	교육비가 포함되는 날과 동일함
	학습비의 일부	교육비가 포함되는 날과 동일함
	학습비의 일부	교육비가 포함되는 날과 동일함
(2) 과외기간 또는 직수료 후 사유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비가 포함되는 일부	교육비가 포함되는 날과 동일함

비고:
1. 강, 과외기간은 과습기간 전체 강, 과습기간을 말하며, 반점생자의 경우는 반점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산정된
과습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기타는 학습기간 종료 1개월째를 과습기간을 끝으로 수습생(학생)으로부터 수습기간이 만료되거나 과습기간이
종료된 경우(일단)에 해당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3. 여기서 해당항목은 기타가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 기타는 해당항목과 관련이 없는 과습기간을 말하며, 기타는
반수사유 발생일부터 3월 이내에 과습기간을 종료하여야 함이다.

년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2020년 4월 15일

윤영·조영기 (주)스카이188 (서명·도인·인)

유 의 사 장

- 1. 붙이는 학습과정 목적이 매우 크기에 함다라
- 2. 기타는 학습과목 보기 직수료에 한함 (후 취업, 강, 과습비유, 강수, 강수, 강수)
- 3. '기타'에 해당되는 것, 기타가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 기타는 해당항목과 관련이 없는 과습기간을 말하며, 기타는 반수사유 발생일부터 3월 이내에 과습기간을 종료하여야 함이다.

교습비 반환 사유별 반환 금액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times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times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비 반환 사유별 반환 금액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사용 후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times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의무 게시사항과 벌점, 과태료

게시사항	벌점 및 과태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1차-6점, 2차-12점, 3차-18점, 50만원
교습비등 게시표 [붙임 4]	1차-10점, 2차-20점, 3차-30점, 50만원
교습비등 반환 기준게시표 [붙임 21]	1차-10점, 2차-20점, 3차-30점, 50만원

주) 게시장소 : 상담실, 접수처, 출입구 정면 등 **학생과 학부모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변경등록(신고) 사항 및 벌점

변경 사항	확인 사항	벌 점	과태료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변경 여부 · 교습비등 등록 여부 · 벌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운영자 및 변경 미등록 및 교습자 무단 변경 시 벌점 20점 / 40점 / 60점 		
시설 무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칸막이 변경 · 시설면적 축소 및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 15점 / 30점 / 45점 		
위치 무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건물 내 이동 · 다른 건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 30점 / 60점 / 등록말소 		
교습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 15점 / 30점 / 45점 		
	세부교습과정위반	과목추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 3점 / 6점 / 9점 	
	교습시간 무단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 15점 / 30점 / 45점 	
	연장운영	1시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 10점 / 20점 / 30점 	

변경등록(신고) 사항 및 벌점

변경 사항	확인 사항	벌 점	과 태 료
휴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이내에 신고 · 타 업종으로 사용 불가 · 기간 : 1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상 휴원(소) 후 신고 미 이행 시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이내에 신고 · 등록증 및 신고증명서 · 반납 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상 폐원(소) 후 신고 미 이행 시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학습자 안전 보상대책 강구

학습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상보험 가입

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 배상 범위

-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교습소는 **5억원 이상**)
- . 의료실비(원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나) 가입 시기

- . 신규설립·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 . 등록(신고) 후 즉시 교습이 개시되는 때에는 교습개시일 이전
- . 휴원(휴소)의 경우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30일** 이내
-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다) **매년 갱신**한 보험증서 사본(보장금액표시된부분)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팩스로 송부**

※ 학습자 안전보험 미가입 시 행정처분(벌점 **15점 / 30점 / 45점**) 및 과태료 **300만원** 이하

지도점검 결과 가장 많은 공통지적사항

1.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가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 해야 함.

2. 강사 인적 사항 미게시

학생, 학부모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해야 함.

3. 학원(교습소) 명칭 사용 부적정

교육청에 신고된 명칭 사용

4. 강사(생활지도사) 미채용 및 채용과 해임 미통보

학원 또는 독서실은 반드시 강사 또는 생활지도사를 채용해야 하며 채용과 해임시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함.

5. 미운영(무단 휴, 폐원)

학원 또는 독서실 설립운영자는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함.

교습비 등 관련 사항

가. 교습비등 등록

운영자는 교습비등을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교습비등 등록 신청서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등록하고 교습비등 게시표를 게시하여야 함

나.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및 영수증 원부 보관

교습비등 징수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증원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영수증 작성 시 성명, 등록번호, 납부일자, 교습과정, 납부내역 등 세부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행정처분 : 경고 (벌점 **5~30점**)

⇒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도 영수증으로 인정

다. 교습비 계산 방식

한달 4.345주로 간주 (기존4.2주) 2020년 1월부터 적용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수 및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 교육대상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교육장소 : 도로교통공단 전국 모든 교육장 (인천은 송도 소재)
- 교육일정 : 매주 화요일 10:00~13:00 (3시간)
- 교육신청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교육시 신분증 지참)
- 교육시기 : 최초 교육은 운영하거나 운전하기 전에 신규안전교육을 필히 받고,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위반시 8만원 벌금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운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그림을 추가하려면 이미지를 클릭하십시오

◎ 배경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6.12.20.개정, ’16.12.20.시행)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금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관련 주요 내용
제도 취지에 맞게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금지 적극 동참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계좌이체나 현금수납 10만원 이상시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번으로 발행
- ◎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납부
- ◎ 신고자에게는 20%를 포상금으로 지급-거래 후 5년까지 신고할 수 있음

참고 사항

1월에 전년도 현금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을 요구할 경우 단말기로는 안되고,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가서 전년도 12월로 발급이 가능함.

단, 전년도에 한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실적이 있어야 함.

자율정화 위원회 보고 서식

시 정 통 보 서

확 인 서

제 호

학원명:

원장명:

1.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서 귀 학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 내용이 지적되었기에 시정 권고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 ①경미한 사항- 1차 시정권고 및 확인
 - ※ 시정권고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시 관할 감독관청에 통보
 - ②중요사항 위반 시 - 즉시 관할 감독청에 통보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위반지적사항

우리 학원은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지도·점검을 받은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자율정화위원으로부터 시정통보서를 받은 바, 20 년 월 일까지 시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점검일: 20 년 월 일

점검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학원자율정화위원

(인)

(인)

이치과연시 규우체 하의기오저하의의회

학원장 :

(인)

연락처 :

이치과연시서부교육청 하의기오저하의의회자 기처